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회칙

2024.12.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이하 "본 학생회")의 구성·조직·역할·의사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자치조직인 본 학생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목표)

본 학생회는 제1조에서 밝힌 목적 달성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유대 증진, 회원 복지 향상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세계로의 발전을 궁극적 사업목표로 설정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 ① 입학·편입학 등의 사유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4조 (정회원과 준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 ③ 준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 휴학생 및 수료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 학생회의 회원은 본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을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본 학생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④ 본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본회 산하 의결기구 발의권
-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 4. 본회 산하 의결기구 정족수 산입
- 5.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항 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⑦ 정회원의 수가 예년의 5분의 1에 미달하며 그 상황이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효력을 정지하고 준회원에게도 각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제5항 제4호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본회 산하 의결기구의 각각의 의결사항에 대한 정족수는 정회원의 총원과 해당 의결에

참여한 준회원의 수를 합한 것을 모수로 하여 산정한다.

⑨ 제7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효력을 의결을 통해 지체 없이 회복시켜야 한다.

제6조 (기구 및 조직)

① 본 학생회는 학생총회, 학년총회, 본과 및 예과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국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둔다.

② 본 학생회는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직능별로 집행국을 둔다.

③ 본 학생회는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권한은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속된다. 특별위원회는 그 조직과 구성을 회장과 부회장이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본 학생회는 행정명칭 상 M1 회원, M2 회원, M3 회원, M4 회원, M5 회원, M6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3장 학생총회

제7조 (위상)

학생총회는 본 학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8조 (소집)

①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 판단되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의 20% 이상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발의할 때 회장에 의해 지체 없이 소

집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발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총회 소집은 최소 5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사안이 시급할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9조 (성립)

① 학생총회는 전체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했을 때 개최될 수 있다.

② 회원의 타 회원에 대한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과와 본과학생이 모두 모이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분리 개최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총회의 개최가 무산되었을 시, 학생회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총회의 재개회를 준비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의결)

① 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②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학년총회 및 본과총회와 예과총회

제11조 (위상)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의 의사결정에 있어 학생총회 다음의 위상을 가지는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2조 (소집)

- ① 각 학년대표는 해당 학년의 공식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여겨질 때 학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 회원의 20% 이상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의할 때 학년대표에 의해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발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 ③ 학년총회 소집은 최소 10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사안이 시급할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3조 (성립)

학년총회는 해당 학년 회원의 과반수 참석했을 때 개최될 수 있다.

제14조 (의결)

- ① 학생총회의 의결은 해당 학년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학년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년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본과총회와 예과총회)

- ① 본과총회 또는 예과총회는 안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본과 또는 예과 회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소집될 수 있다.
- ② 본과총회는 본 학생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과총회는 부회장이 소집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타 본과 및 예과총회의 소집, 성립, 의결에 관한사항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준한다.

제5장 회장과 부회장

제16조 (위상)

회장과 부회장은 본 학생회를 대표한다.

제17조 (선출)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전체 학생의 직접 · 보통 · 평등 ·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② 선거의 시기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임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원활한 선거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5일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0일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으며, 입후보 마감과 동시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⑥ 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 M3 이상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부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 M1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 ⑦ 회장과 부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서로 팀을 이루어 출마를 하며, 투표는 팀에 대한 포괄적 투표방식이 된다.
- ⑧ 선거의 결과는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 ⑨ 제5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자격 제한 없이 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 ⑩ 제5조 제9항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본조 제9항에 따른 자격 제한 완화는 즉시 그 효력이 소멸된다.

제18조 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을 했던 자가 회장이 되는 것은 무방하다.

제19조 (권리와 의무)

- ① 회장과 부회장은 본 학생회의 사업을 총괄하고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집행국의 임명권을 갖는다.
- ③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 ④ 학생총회, 본과총회 또는 예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한다.
- ⑤ 12월 한 달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서 기존의 학생회가 차기학생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문건, 예결산안 등의 자료를 이양하고 계획·운영·집행 등 학생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전해주어야 한다.

제20조 (탄핵)

- ① 회장 또는 부회장이 본 학생회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며, 그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회장 또는 부회장은 탄핵될 수 있다.
- ② 탄핵안건은 전체회원의 20% 이상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발의할 때 10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탄핵당사자인 회장 또는 부회장이 주관할 수 없다.
- ③ 탄핵안건은 전체회원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6장 집행국 및 집행국회의

제21조 (위상)

집행국은 본 학생회의 사업 집행에 있어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조직이다.

제22조 (구성)

- ① 집행국의 조직과 체계 및 인적구성은 회장과 부회장이 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집행국원을 임명한 뒤 반드시 전체총회에서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그 절차와 방식은 회장과 부회장의 재량으로 한다.

③ 집행국장은 집행국원 중 1인으로 하되, 회장이 임명하거나 학생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23조 (임기)

집행국의 임기는 해당 집행국을 임명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24조 (탄핵)

① 집행국장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며, 그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집행국장은 탄핵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이나 부학생회장은 집행국장의 탄핵을 제의할 수 있다.

③ 탄핵안건은 전체회원의 10% 이상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발의할 때 10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④ 탄핵안건은 운영위원회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25조 (집행국회의)

① 집행국회의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집행국장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국회의의 소집, 성립, 의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그것에 준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6조 (위상)

운영위원회는 본 학생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기구로서 학생총회 다음의 위상을 가진다.

제27조 (구성)

- ①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집행국 1인, 각 학년 대표(총 6인), 여학우대표 1인, 합하여 총 10인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년 대표나 여학우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을 시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전체 운영위원의 수의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8조 (소집)

- ① 한 학기에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운영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소집 일시를 정할 수 있으나, 학기 중순에 1회, 학기 말에 1회 총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성립)

- ① 과반수 참석 시 개최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

-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성립된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1조 (보고)

- ① 의결될 사안이 있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에는 모든 학우들에게 그 의결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반드시 모든 학우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보고 시기는 각각 운영위원회 소집 전 3일 이전, 소집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32조 (참여)

① 운영위원회에서 알린 의결 사안에 관심이 있어 반드시 참여하기 원하는 학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회 시 참여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또는 의결된 사안이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띄어쓰기) 사안이라고 판단될 시 학생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제8조 제2항에 준한다. 요청 기간은 해당 운영위원회 소집일 이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8장 재정

제33조 (수입)

① 본 학생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 및 수익 사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이 내는 회비는 학생회비와 행사참여비로 구분한다.

③ 회원이 내는 학생회비의 액수는 매년 첫 학생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학생 총회에서 학생회비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 1주일 내로 다시 총회를 개회, 학생회비를 결정한다.

⑤ 행사참여비는 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확정 및 예산보고 된 금액의 12할 이내로 정하여 전체회원에게 징수한다.

⑥ 해당 학년도의 각종 행사참여비는 예과 및 본과 모든 학년의 개강 이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행사참여비의 징수 시, 예과 및 본과 모든 학년이 개강한 시점부터 종강한 시점까지의 행사에 대한 행사참여비를 한 번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예·결산보고]

- ① 예산안은 매 학기 학생총회에서 참석인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② 예산안이 부결되는 경우 재정팀장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③ 결산보고는 매 학기마다 전체회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관리 및 책임)

- ① 학생회비의 지출은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확정된 각 행사 당 지출의 12할을 넘을 수 없다.
- ② 동조 제1항의 지출제한 범위를 넘지 않고서는 행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집행국 회의의 동의를 얻어 추가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팀장은 지체없이 초과 지출내역과 사유를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
- ③ 학생회장 및 집행국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안에 의해 정해진 지출 외에 학생회 활동 시 불가피한 지출을 학생회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④ 동조 제3항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재정팀장에 의해 결정되며, 재정팀장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지출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 ⑤ 활동지원금으로 학생회장은 학기 당 30만원, 부학생회장은 학기 당 15만원, 각 학년 대표는 학기 당 5만원(본과) 또는 3만원(예과)을 지원받는다.
- ⑥ 재정팀장은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추가 지출사항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 ⑦ 위 조항 외에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정팀 내부회칙으로 정한다.

제9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5조 (성립)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로 구성한다.

1. 의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사퇴하였을 때
3.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제36조 (위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과대학 학생회의 결위 기간동안 의과대학 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7조 (구성)

- ① 제35조 제1호에 따라 구성될 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을 호선한 후,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성될 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중 1인을 호선한 후,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과대학 집행국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의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39조 (의무)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의무를

갖는다.

③ 비상대책위원은 차기 의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지위를 누구에게도 이임할 수 없다.

④ 보궐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0조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의과대학 학생회장단 당선 확정공고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의 발생)

이 회칙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① 회칙을 개정해야 할 사유가 있을 시, 회장은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 판단되면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 회원의 20% 이상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면 회장은 이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회칙개정안은 최소 5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사안이 시급할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⑤ 개정회칙의 효력은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제3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예외)

① 회칙 제5조 제7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학생총회 인준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인준을 하지 아니한다.